

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 안내

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2. 27.

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

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<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>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직렬별 선발인원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「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」은 **2024년 2월 중**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.

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, 수험생 여러분은 반드시 각 시험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

시 험 명	원서접수	시험일정		
		필기시험 (1·2차 병합)	면접시험 (3차)	최종합격자 발 표
8·9급 공개경쟁임용시험	3월	6. 22.(토)	8월	9월
7급 공개경쟁임용시험, 연구직·지도직·9급 경력경쟁임용시험	7월	11. 2.(토)	12월	'25년 1월

※ 선발예정 직렬(직류) 및 인원은 미정, 해당 시험공고문 확인('24년 2월 중 공고 예정)

□ 2024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

○ 7급 이상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

현 재	변경(2024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- 7급 이상 : 20세 이상 - 8급 이하 : 18세 이상	- 7급 이상 : 18세 이상 - 8급 이하 : 18세 이상

○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폐지

현 재	변경(2024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(7급) 기술사(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), 기사(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) (9급) 기술사(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), 기사(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) 산업기사(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) 기타(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)	(7,9급) 삭제

○ 신규임용시험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

직류	직류	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	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
전산	전산	기술사 :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 기사 :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, 빅데이터분석	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
	데이터	산업기사 :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 기능사 : 정보기기운용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	

○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

직류	직류	현 행	개정안
전산	전산	기술사 :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 기사 :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	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, 빅데이터분석
	데이터	산업기사 :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 기능사 :	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

○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

현 재	변경(2024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
○ 공업9급(기계운전)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기준 변경

현 재	변경(2024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굴삭기운전기능사(국가기술자격)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(굴삭기) 모두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한 사람 ※ 반드시 해당면허의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후 실무경력을 쌓은 것만 인정	굴착기운전기능사(국가기술자격)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(굴착기) 모두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한 사람 ※ 반드시 해당면허의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후 실무경력을 쌓은 것만 인정